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5
----------	------

제출연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용어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 심의·조정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및 관련 용어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제8조)
- 나. 위원회 회의 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외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
- 다.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실효성 부재로 삭제함(안 제17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가 삭제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7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 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0. 11. 9. ~ 11. 30.)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5)
-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결과요약서(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 -----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p>
<p>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p>
<p>1.~ 3. (생략) 4. <u>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u>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u>지적재산권의 보호</u> 6.~ 8. (생략)</p>	<p>1.~ 3. (현행과 같음) 4. <u>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u>----- ----- 5. ----- ----- <u>지식재산권</u> ---- 6.~ 8. (현행과 같음)</p>
<p>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제6조에 따른 <u>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u> ----- ----- -----.</p>
<p>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생략)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p>	<p>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p>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2. (생략)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8. (생략)

제12조(회의 등)

①~④ (생략)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⑧ (생략)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관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의 무흠결성과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도록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하며,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

1.~ 2. (현행과 같음)

3. 지능정보기술-----

4.~ 8.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

⑥~⑧ (현행과 같음)

<삭제>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명과 관련 용어의 명칭 변경 및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삭제에 따른 수정에 해당되며 기존의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인프라, 시스템이 부재함으로 이를 폐기, 처분, 대체하기 위한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용추계에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엄지원 (02-3999-728)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0.11.1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2조,제6조,제8조	<p>- 동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12.10.자로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p> <p>※ 단, 법령명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아님</p>		“원안동의”
안 제17조 (삭제)	<p>- 한편 제17조와 관련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는 관련 계획이나 시행 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p> <p>※ 서울시의 경우 2019년도에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조항을 삭제함</p>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35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엄지원	전화번호	02-399-9728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11월 16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11월 19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1월 19일</p>				

【별첨 5】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성 명 : 엄지원 직 급 : 주무관 연락처 : 02-3999-728
평가담당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민철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는 제1조(목적)에 의거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제4조(기본원칙)에 의거 학생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학생인권과 관련성이 높은 자치법규로 판단됨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한한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례 전반의 목적과 그 실천방법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기본정신에 비추어 학생인권 보장에 적합한지, 실효성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정책결정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이해당사자(학생, 교사, 보호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내용으로 제6조5항 신설을 개선권고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제6조⑤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div>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또는 개인별 정보화 정도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한 항목이 필요함 - 다음의 내용으로 제7조4항 신설을 개선권고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제7조④ 교육감은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학교별 정보화(정보화 물적 기반 및 학생 정보화 역량 등) 격차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신설> </div>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의거 학생은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다음의 내용으로 제10조4호 신설을 개선권고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제10조③ 4. 학교급별 학생 대표<신설> </div>		
해당조항	참고의견		
	해당 없음		

【별첨 6】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결과요약서		
구분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입법예고	의견없음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 분석평가	해당없음	-
학생인권 영향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권고</p> <p>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전반적인 검토</p> <p>② 다음의 내용으로 제6조5항 신설을 개선권고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6조⑤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p> </div> <p>③ 다음의 내용으로 제7조4항 신설을 개선권고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7조④ 교육감은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학교별 정보화(정보화 물적 기반 및 학생 정보화 역량 등) 격차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p> </div> <p>④ 다음의 내용으로 제10조4호 신설을 개선권고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10조③ 4. 학교급별 학생 대표 <신설></p> </div>	<p>①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교육관계자에 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보격차를 포함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정신에 부합함</p> <p>②, ③ 기수용 중(제4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소속기관구성원(이하 “교육 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div> <p>④ 부분수용: 제12조제5항 수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12조(회의 등)</p> <p>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 학생 등 이해당사자 추가</p> </div>

관계법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 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2020. 1. 9., 타법개정]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